



: 2019-10-15

서울고등법원

제 10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노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최수봉(기소), 배종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동, 문혜민
변호사 이한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46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을 각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각 편취액에 정부출연금 중 본래 용도대로 지출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편취액을 특정할 수 없고, 설령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행의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경상북도로 각 특정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해자 경상북도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사기죄로 처벌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그에 따른 죄수에 관하여 살펴본다.¹⁾

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 중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죄사실란 제1의 제① 내지 ⑨항의 각 피해자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단법인 AC(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특정하였고, 당심 제3회 공판기일 및 2019.

7. 16.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도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이 사기의 피기망자이자 피해

1) 한편 검사는 2019. 7. 18.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단순오기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란 제1의 제⑨항의 편취액 합계 '48,759,910원'을 '58,759,91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가 오기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비록 공소장변경신청의 형식에 의하였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단순히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판대상이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소장의 명백한 오기 또는 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공소장정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제① 내지 ⑥항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및 정부출연금 등의 사업비 지급 내지 보조금 교부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²⁾이고, 범죄사실 제1의 제⑦항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³⁾이며,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제⑧ 내지 ⑨항의 사단법인 AC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⁴⁾이다.

3)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이 위와 같이 위탁받음으로 인해 대한민국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이 사건 각 전문기관에게 정부출연금 등의 사업비가 교부되었을 때 그 사업비 등의 소유권 및 그 권한과 책임은 모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제3항, 제7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한 제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제20조 제4항 제7호, 제29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제2조 제2호, 제3조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지정 보도자료 제6쪽).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6조 제2항,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제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8조),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지정 보도자료 제6쪽).

4) 사단법인 AC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BC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이 사건 운영요령 제36조 제4항).



두 이 사건 각 전문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각 피해자는 그 소유의 사업비를 편취당한,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인 이 사건 각 전문기관으로 봄이 옳다.

나. 죄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사업비를 받아냈다는 범행 수법은 대체로 동일·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제① 내지 ⑨항의 각 개별과



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개별과제별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각각의 개별과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각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범행에 사용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업체 등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각 과제 내지 사업을 통틀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개별과제 내지 사업의 구분을 무시하고 이 사건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위 제① 내지 ⑨항의 개별과제 내지 사업별로 독립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를 대한민국 또는 경상북도로 특정하고 위 피해자별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의 피해자 특정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민간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기죄의 객체인 타인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만 이 사건 각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이 사건 운영요령 제18조 제1항), 그 지급절차는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인 신청기업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위와 같은 사업비가 이 사건 각 전문기관 명의의 통합계좌로 예치되어 관리되고, 그 이후 주관기관이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별사업비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 측의 확인절차를 거쳐 주관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를 경유하여 해당 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시키는 결제 대행 방식으로 지급되거나(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게 되는 구조이다(전문기관인 사단법인 AC의 경우).

나) 한편 전문기관의 장으로서의 주관기관이 위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고(이 사건 운영요령 제14조 제2항 제3호),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이 사건 운영요령 제29조 제1항 제13호), 나아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문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민간부담금을 입금한 후 연구개발을 시작하도록 되어있다



(증거기록 11권 제3829쪽). 이와 같이 사업협약에서 주관기관에게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주관기관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위 사업비를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주관기관이 그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해당 간접보조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주관기관인 (주)D 내지 (주)D 지점(구미사업장) 등은 민간부담금을 자신 소유의 돈으로 이 사건 각 전문기관에 지급할 당시에 추후 각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종료 시에 정산을 거쳐 반환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수는 있으나, 자신이 그 돈의 소유자로서 이와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D 등 이 사건 각 주관기관은 이 사건 각 사업협약에 따라 자신의 민간부담금으로 예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전문기관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로써 그 돈은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다만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은 그 민간부담금을 각 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함께 (주)D 등에게 사업비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러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D 등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장비·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이 사건 각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7124 판결의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그중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



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편취액의 특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에도 제품에 대해 연구개발을 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장비·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전문기관을 속여 연구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실제로 사업비 상당의 연구장비·재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마치 사업비 상당의 연구장비·재료비가 실제로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비를 지급받거나 실제로 지출된 사업비 상당의 연구장비·재료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어 행위 전체가 위법하므로 그 교부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B이 교부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실제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교부받은 사업비 전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14도 17124 판결의 원심판결인 위 대구고등법원 2014노37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교부받은 이 사건 사업비 전체가 각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① 원심판결 제4쪽 제13~14행, 제5쪽 제10행, 제6쪽 제7행, 제7쪽 제4행, 제8쪽 제3행, 제21행의 각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부분을 각 "전문기관인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라고 고쳐 쓰고, ② 원심판결 제9쪽 제16~17행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부분을 "전문기관인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라고 고쳐 쓰며, ③ 원심판결 제10쪽 제17~19행의 "AC를 기망하여 2014. 1. 28.부터 2014.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9,120,000원,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18,630,000원" 부분을 "전문기관인 피해자 AC로부터 2014. 1. 28.부터 2014.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2,105,200원"으로 고쳐 쓰고, ④ 원심판결 제11쪽 제18~19행 "AC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부분을 "전문기관인 피해자 AC로부터"로 고쳐 쓰며, ⑤ 원심판결 제12쪽 제9행, 제12행, 제13행의 각 "보조금" 부분을 "간접보조금"⁵⁾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심판결에 첨부된 각 별지도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제①항의 사기의 점,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를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로 보고, 2013. 6. 13.부터 2018. 4. 1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601,585,608원[전체 편취금액 1,615,168,636원에서 연구과제 ⑧의 편취금액 42,105,200원 중 국비가 아닌 도비 13,583,0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를 이 사건 각 전문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의율하더라도 적용법조가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피해자는 대한민국이나 경상북도가 아니라 각 전문기관이라고 주장한 점, 이 사건 공판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고쳐 쓰는 것이 상당하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단법인 AC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제② 내지 ⑨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사업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제①, ⑤, ⑥, ⑦항의 사기편취액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액⁶⁾에 해당하는 간접보조금 부정 교부의 점, 각 사업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제①, ⑤, ⑥, ⑦항의 사기편취액에 해당하는 간접보조금 부정 교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제①항의 사기편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사기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제② 내지 ⑨항의 각 사기편취액⁷⁾에 해당하는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6) 다만, 범죄사실 제1의 제⑧항의 사기편취액과 관련하여서는 그 편취금 42,105,200원 중 국비가 아닌 도비 13,583,0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8,522,172원(42,105,200원 - 13,583,028원)의 간접보조금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7) 다만, 범죄사실 제1의 제⑧항의 사기편취액 42,105,200원 중 국비가 아닌 도비 13,583,0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8,522,172원(42,105,200원 - 13,583,028원)의 간접보조금이 위 제⑧항의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6억 원을 넘는 사업비를 편취함과 아울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해당 전문기관인 피해자들에게 환원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 2019-10-15

재판장 판사 박형준 _____

 판사 임영우 _____

 판사 신용호 _____